

# 대전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산 공동주택 호반써밋 그랜드파크Ⅳ 임차인모집공고(案)

##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대전 용산지구 4블록 호반써밋 그랜드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일반 관람공개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http://hobansummit-djys.co.kr/gp>)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hobansummit-djys.co.kr/gp>) 및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방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방침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첨자 서류접수 및 정당계약 시 사전예약한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항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 당첨자분들의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 대전 용산지구 4블록 호반써밋 그랜드파크는 분양 상담 전화(1670-061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은 '대전 용산개발 주식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및 시행규칙 14조의11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대전 용산개발 주식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1.07.2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 특별공급 대상자
      - ① 청년 : 만19세 이상이면서 만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고령자 : 만 65세이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③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모집공고일[2021.07.29.(목)]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 3)을 준용하여, 임대차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요건 및 청년 특별공급의 연령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소득이 이 임차인 모집공고상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및 고령자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 요건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총세대수에서 특별공급(164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주택홍보관 개관은 2021.07.29.(목)입니다.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Home(한국부동산원)에서 할 수 있으며, 당사 주택 홍보관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이 공고문은 대전 용산4블록 호반 씨밋 홈페이지(<http://hobansummit-djys.co.kr/gp>)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06.01)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④항, ⑤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명의 및 명의변경

-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명의 변경은 불가하나, 입주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복수의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자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하며, 이 주택의 다른 세대의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전부는 관계법령상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의 임차인은 어떠한 사유라도 공동명의자 중 1인을 단독명의로 하는 변경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 사업지 2블럭, 4블럭 중복청약 후 동시 당첨 시 1개 블럭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1.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지원센터 - 25071호(2021. 07. 28.)로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01번지 일원 (대전 용산지구)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5개동, 총 545세대(특별공급 1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주택관리 번호	약식 전용 면적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 면적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2021850007	59m <sup>2</sup>	59	59.9168	28.6595	88.5763	42.0418	130.6181	13	12	99		124	2024.05
	84m <sup>2</sup>	84A	84.9769	32.4924	117.4693	59.6257	177.0950				268	268	
		84F	84.9769	32.4924	117.4693	59.6257	177.0950	4	4	32		40	
		84B	84.9899	33.3701	118.3600	59.6350	177.9950				113	113	
합계			43,206.4271	17,332.2703	60,538.6974	30,316.8069	90,855.5043	17	16	131	381	545	

※ 실시설계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기준 (59, 84A, 84F, 84B) 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타입 84A, 84F는 공급 유형(일반공급/특별공급)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 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 면적(m<sup>2</sup>) X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벽체공용,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타입 표기 안내

주거전용면적(m <sup>2</sup> )	59.9168m <sup>2</sup>	84.9769m <sup>2</sup>		84.9899m <sup>2</sup>
타입	59	84A	84F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사이버모델하우스, 주택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어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평형 내 타입 구분의 차이를 위하여 84A, 84F, 84B로 구분하였으며, 청약 시 주택형에 대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당해주택은 별도의 분양전환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분양전환가격 및 조건 기준은 별도로 사업주체가 정하여 양도가능 시기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이를 수용한 경우 해당조건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입시점

(단위:세대,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공급유형	임대보증금 / 납입시점								임대료 (전층)	
			총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59	124	특별공급	193,520,000	19,350,000	19,350,000	19,350,000	19,350,000	19,350,000	19,350,000	19,350,000	77,420,000	81,000
84F	40	특별공급	275,280,000	27,520,000	27,520,000	27,520,000	27,520,000	27,520,000	27,520,000	27,520,000	110,160,000	109,000

■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입시점

(단위:세대,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공급유형	임대보증금 / 납입시점								임대료 (전층)	
			총액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84A	268	일반공급	313,8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125,600,000	109,000
84B	113	일반공급	313,8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31,380,000	125,600,000	109,000

-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주택형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과 중도금,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4조제2항 에 따라 1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선택형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전환임대조건

(단위:세대,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공급유형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9	124	특별공급	193,520,000	81,000
84A	268	일반공급	313,880,000	109,000
84F	40	특별공급	275,280,000	109,000
84B	113	일반공급	313,880,000	109,000

###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 공급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7.29.(목)]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li> <li>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li> <li>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태아를 포함 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 이하일 것</li> <li>②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li> <li>-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li> <li>-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li> <li>-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li> <li>• 예비임차인 선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1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공급물량의 2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ul>
	신혼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7.29.(목)]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li> <li>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 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li> </ul> </li> </ul>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7.29.(목)]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령 : 만 65세 이상인 사람(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li> <li>나. 소득 :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li> </ul> </li> </ul>	

-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7.29.(목)]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은 반드시 59, 84F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하오니 청약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은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공급 항목별(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소득 기준 산정

(단위 :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2,991,631	4,562,535	6,240,52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110% 이하	3,290,794	5,018,789	6,864,572	7,803,626	7,803,626	8,133,012	8,555,826	8,978,639
120% 이하	3,589,957	5,475,042	7,488,624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 N→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증·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및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후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분에 대한 잔여물량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예비임차인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차인모집공고일[2021.07.29.(목)]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li> <li>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li> <li>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li>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입니다.</li> </ul> </li> </ul> <p>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7.29.(목)]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p>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방법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및 동·호수를 선정합니다.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당첨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임차인 선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li> <li>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계획이며,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예비임차인 계약 이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사업 주체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합니다.</li> </ul>

■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일반공급 전주택형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li> <li>※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은 되지 않으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li> <li>※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li> </ul>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조의 제2의3, 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은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등기 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7. 무허가 건물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 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4. 공급일정

#####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신청 일자	신청 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특별 공급	2021.08.04.(수) ~ 2021.08.05.(목) 08:00 ~ 17:30	인터넷접수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10만원	2021.08.10.(화)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 )
일반 공급				

※ 상기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은행 인터넷뱅킹가입(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금(10만원)이상이어야 함)</li> </ul>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 청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접속 ⇒ 청약신청 ⇒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 청약신청하기</li> <li>② 청약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li> </ul> </li> <li>[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접속 후는 PC 청약방법 참조</li> </ul>

- 청약은 PC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홈' 검색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전국 시중 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 무주택자(청년형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약약을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 이 주택은 일반공급 및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특별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예비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http://hobansummit-djys.co.kr/gp>)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분에 대한 잔여물량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타 모집분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 **인터넷 청약이 불가(노약자, 장애인 등)할 경우 주택홍보관 방문(견본주택 접수) 청약시 유의사항**

•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일자	신청장소	비 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불가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접수	2021.08.04.(수) ~ 2021.08.05.(목) 10:00 ~ 15:00	주택홍보관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329번지 (청약신청금 없음)	-

■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주택공급신청서(주택홍보관 비치) / 본인, 배우자 서명가능 청약신청금 불필요(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할 경우에 한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대리신청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확인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발표 장소
특별공급	2021.08.10.(화)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일반공급		

- 착오 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시기: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평일 09:00~16:00 (2021.08.11.(수))
- 환불 대상 : 인터넷 청약자 전원(당첨자 포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분	환불장소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5.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1. 08. 11(수) ~ 2021. 08.17(화) / 10:00 ~ 17:00	당사 주택홍보관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329번지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1. 08.18(수) ~ 2021. 08.23(월) / 10:00 ~ 17:00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차인에게 우선 공급함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인터넷뱅킹 사용 및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6.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8.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청년	○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	3.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고령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2. 소득관련 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공급 유형별	신혼 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	1. 혼인 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확인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	1. 결혼 확인서류	· 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공통 (해당자)	○	3. 소득 관련 서류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1. 임신증명서류	· 태아가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3. 비사업자확인각서	· 주택홍보관 비치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 동포는 국내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1.07.29.(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택홍보관 방문시 청약 당첨자 외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고
계약금/잔금	KEB 하나은행	145-910011-95405	우리자산신탁(주)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000000홍길동)
- 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주택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점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은 각 지정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 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중도금 미납금 및 연체료, 잔금 등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모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 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대출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월 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주 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6. 유의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방문 시 계약자 외 출입이 제한됩니다.

### ■ 입주지정기간 : 2024년 05월 중 (예정)

-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입주지정기간)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 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종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

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임대보증금 보증안내(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대전 용산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인 [대전 용산개발 주식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주식회사 우리자산신탁'에 수탁하였습니다.
- 본 임대주택의 사업구조에 따라, 본 임대주택의 준공 후 그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을"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후순위로 금융기관의 담보권(신탁 또는 근저당 등)이 설정될 수 있으며, 청약희망자 또는 계약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약자 또는 계약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주택법 」, 「 주택임대차보호법 」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홍보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주택 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 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오백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2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10년)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 · 층별 · 호수별로 일조권 · 조망권 · 생활권 · 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홍보관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목업)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일부를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 중도금, 잔금 및 당월 분 임대료를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 합니다.
-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하며,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당월분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일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고지 및 공고문 부착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1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계약시 입주자에게 별도의 용자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매도청구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의 시공관련 문의로는 시공사인 (주)호반건설, 파인건설(주)에서, 하자 관련 사항은 하자 유형에 따라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 시공사인 (주)호반건설, 파인건설(주)에서 접수 받을 계획 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시공사의 명칭,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설계·시공 등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sup>2</sup>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 면적( m<sup>2</sup> ) X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세대의 내부 기둥 및 창문의 유무, 위치 상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바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시 대지경계가 조정 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공원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VR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VR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VR모델하우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의 수전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에 인접한 세대는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공간의 점검구나 문이 설치될 수 있으며, 주차장, 상가의 배기로 인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출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실 대지측량,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외관(입면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의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외부 환경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외부 여건, 개별 인허가 결과, 지자체 방침 및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장해, 지장물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문화공원, 소공원 등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판매,업무용지, 유치원용지, 주차장용지, 공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북측 : 폭14M, 서측 : 폭 25M )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내, 외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 남측으로는 근린공원 및 통행로가 조성되어 있어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통행객들로 인한 일부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대지 남측으로는 호남고속지선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택지지구내 공원 및 연결녹지는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레벨차이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접근동선 위치의 변경 및 계단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지구 외 서측도로, 남측도로 일부구간 및 지구내 2블럭 동측, 유치원부지, 근린공원 일부구간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음벽의 높이는 예측소음도에 따라 최고높이 17.5m~6.5m로 설치예정이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설치위치 및 방음벽 최고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서측 야산에 분묘가 위치하고 있어 일부세대의 조망간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남측 철탑지중화 공사에 따른 C/H(철탑)으로 조망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단지 내부 환경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 및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한 일부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 및 차량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차로(단지 내외 도로와 비상차로), 야간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진출입 차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하거나,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 권이 일부 간섭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405동 4호라인)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시설, 제연설비, 환기설비 등이 외부 공간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보호가 침해되거나, 소음 및 냄새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및 이동거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진출입구, 외부도로 진출입구 및 단지 내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미지 험프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소등 등에 의한 사생활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채광/환기창, D/A(환기구), 외부계단 등이 설치되고, 저층 세대 발코니 전, 후면 하부에 팬룸,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의 배치 특성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 상이함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 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게공간과 필로티,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조경시설, 산책로, 채광/환기시설물, 실외기 등의 설치 및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에 의한 침해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04동 전면 근린공원 보행자출입구 설치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정)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 될 수 있습니다.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인접 설치 및 보일 수 있습니다.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신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세대 통합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멀티플렉서(MultiPlexer)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공용홀(로비) 규모 및 천장고는 동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실)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설비의 설치 위치 및 개소,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 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해당 비용은 공용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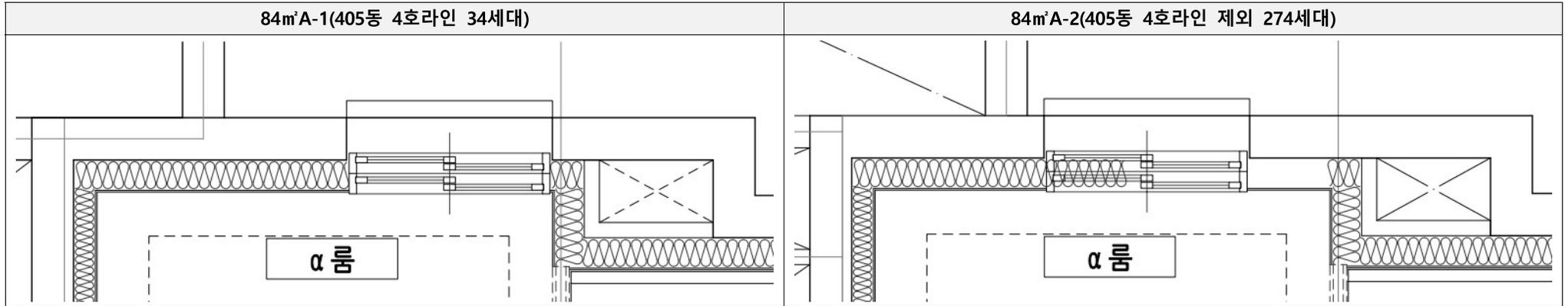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품 보관소)은 각 동 주변에 설치(설치 위치는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간섭받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지하주차장 이용시 일부 동에 대하여 주차대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및 비상도로에 의해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 저층세대에 한하여 옥외계단 및 기타시설물 등에 의한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되는 우편물 수취함은 우편물 수취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단지 중앙광장 대지 레벨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단지 대지레벨에 의해 우편물 수취함 위치가 상이하 며, 또한 각 동별 우편물 수취함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하니 필히 계약 전 모형 및 인허가 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TV 공청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정동의 지붕층에 TV 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방향 기준),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안테나/중계설비(404동, 405동 옥탑 및 지붕층(2개소)) / 402동, 403동 사이 지하1층 헬륨(1개소) / 402동, 403동 사이 지하2층 헬륨(1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이 불량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특고압 전력수전을 위한 한전 지상개폐기 설치로 인해 세대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지침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단지 서측1개소, 북측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외부 도로는 인허가 진행에 따라 제반시설(무단횡단 방지 헬스,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횡단보도, 진출입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전동)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변 환경(일광 발전 효율, 음영 간섭 여부 등)에 따라 재배치하여 모델하우스에 설치 단지모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405동 1~2호 라인 옥상에 고가수조가 설치됩니다.
- 30층 이상인 주동(401동, 405동)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피난용 승강기 1대가 설치됩니다.

## ■ 단지 외관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 옥외시설물 등은 공사 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없음),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무인택배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현재 미정인 상태며 추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예정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옥탑구조물, 야관경관용 조명,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0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및 발코니, 욕실, 현관 등 제외.)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는 가구 및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의 사이즈를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84A타입은 알파룸 외기 창호 위치에 따라 84m<sup>2</sup>A-1과 84m<sup>2</sup>A-2로 구성되어있어 청약 및 계약 전에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사진행 시 창호의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 불가))에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소방배관이 주방발코니에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난방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주방발코니에 설치되는 전열교환 환기장비 마감커버는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 크기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의 줄눈간격은 시공 중 다소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각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는 배관이 노출되며,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소방배관,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대피시설)는 화재시 하부층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1층 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주동 1층에 부대시설이 위치할 경우, 상부 2층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 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필로티 상부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완강기가 설치되어 비상 시 피난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사물인터넷(IoT)서비스는 카카오와 제휴한 서비스로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연동은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입주시점부터 10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되며 또한 음성인식스피커는 분양가 미포함이며 입주시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체감지기 설치는 1~2층,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VR모델하우스에서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VR모델하우스와 위치 및 색온도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간 벽체 일부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정물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풍압 등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입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VR모델하우스 기준으로 적용하되 본공사 시 입찰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손잡이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입주민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구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금회 공급세대인 1,246세대 전세대를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합니다. 이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공사 시 세대 각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VR모델하우스와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조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이사시 세대난간대 높이 등의 간섭에 의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냉장고, 불박이장, 김치냉장고, 소파 등)을 외부로 통한 세대내 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사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벽 마감재가 설치되는 세대는 외부 창호, 난간 및 벽체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디자인, 마감상세 계획 등이 타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 관련 유의사항

- 대전 용산지구의 학교 설립 주체는 유치원·초교·중학교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 교육청이며, 지구 내 모든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 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 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공동주택에 입주 예정인 초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현 통학구역(대전용산초)에 배치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공동주택에 입주 예정인 중,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기존 학교군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며, 배정 일정 및 방법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에 교육시설은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해당 부지 계획에 의하며, 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유치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지하주차장 등 공통사항

- 기타시설로 무인택배보관함,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품 보관소)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부 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평면, 입면, 단면, 창호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추후 입점자가 설치하는 식당 주방에서 발생하는 냄새, 연기 등으로 인해 인근 주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임대인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길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3동 전면, 404동 측면 주민운동시설 설치 / 403동 전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됩니다.
  - 401동 전면 경비실 및 문주 설치 / 402동 측면 인근 경비실 및 문주 설치(추후 본 시공 시 문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401동 후면 근린생활시설 및 근생 주차(4대), 쓰레기 분리수거소, 에어컨 실외기등이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401동 / 402동 / 403동 / 404동 4호 / 405동 2, 4호 1층에 필로티 설치로 통과 동선에 따른 소음, 간섭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401동 후면, 402동 측면 인근 관리사무소 설치 / 402동 전면 어린이집 설치 / 404동, 405동 전면 경로당 설치 / 402동, 405동 지하1층(데크하부) 인근 커뮤니티 시설 설치 / 402동 1층 4호 게스트하우스 설치등 인접세대의 소음, 프라이버시 간섭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405동 지하1층에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가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커뮤니티 시설

- 커뮤니티시설 등은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402동 3, 4호 지하1층 전면 및 405동 지하1층 배면 사이(데크하부)에 설치되어 단지내 보행통로 및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커뮤니티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의거,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당 단지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이 추진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업체(자)는 대전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되며 최대 정원의 70%까지 입주민 우선입소 혜택이 있습니다.

## ■ 주차장 및 지하 계획

- 주차램프 진입부분 유효높이는 지하1층은 2.3m이고, 지하2층은 2.7m이며, 지하주차장 주차면의 유효높이는 2.1m임. 다만,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정고는 일부 구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에 설치된 401 전면 지하주차장 출입램프는 지하2층으로 바로 출입 가능하며, 단지 북측에 설치된 402, 403동 사이 지하주차장 출입램프는 지하1층으로 바로 출입 가능하고 지하주차장 내부램프를 이용하여 지하1~2층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402, 403, 404, 405동은 지하 2개층(지하1층~지하2층) / 401동은 지하 1개층(지하2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2층 주차장은 전 동에서 이용이 가능 함.
- 전기자동차 충전구획은 해당 주차면은 충전시설 이용 시 실제 주차용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 가능대수는 총 742대 (근린생활시설 주차 4대 제외)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4대)은 근린생활시설 후면 및 401동 배면에 위치하여 아파트 북측 진출입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차량통행에 의해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바닥단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전동기 사용(라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 설비/절수기기(바목)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수변전설비(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나목)	적용
	조명설비(다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마목)	적용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용역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612,682,000원	부가세 포함
전기감리용역	(주)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535,891,000원	부가세 포함
소방감리용역	(주)금라기술단	255,750,000원	부가세 포함
통신감리용역	(주)금라기술단	143,200,000원	부가세 포함

■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

사업주체	시공회사	
대전 용산 개발 (주) (110111-6133550)	(주) 호 반 건 설 (204711-0007384)	(주) 파 인 건 설 (160111-0238968)

홈페이지 : <http://hobansummit-djys.co.kr/gp>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401번지 일원 (대전 용산지구)

주택 홍보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329번지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1670-0612